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문화다양성의 보호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및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정〉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74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1항)	3
2.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안 제12조의2 신설)	6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12. 18.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권장·보호·육성하는 등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정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방송·영화, 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디어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제1항)

개정안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에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과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u>지방자치단체</u> 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u>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는-----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조¹⁾는 문화다양성²⁾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감³⁾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 중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보호·육성 및 재원 마련,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업무의 수행 주체로 보기 어렵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4)에서 학교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 시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5)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안 제12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송·영화·인터넷·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화·인터넷·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노인·청소년·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향유 주체에 대한 차별 예방 기준 2.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제작자 교육 기준 3. 알고리즘 또는 콘텐츠 추천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장 기준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 집단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화적 정체성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예술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방송·영화·인터넷·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창작과 향유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조⁶⁾는 국가에 문화다양성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포괄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⁷⁾에 따른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화, 만화, 게임 등 콘텐츠를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 범위 내에서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콘텐츠 제작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에 근거하는바, 국가가 법률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위는 그 형식과 관계 없이 현장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제작자의 창작 의지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고, 특히 방송사별로 운영 중인 자체 심의 규정과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이미 정착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 규율은 민간의 자율 규제 생태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 하여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7)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⁸⁾에 따라 ‘콘텐츠’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바, 문화다양성 친화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할 실익이 적으며,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관련 정책 추진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현행 「방송법」 제6조⁹⁾, 제33조¹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¹¹⁾, 제21조¹²⁾, 제31조¹³⁾ 등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권익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및 방송사별 자체 심의 규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9)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33조(심의규정)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1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12) 제21조(인권 보호) ① 방송은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13)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바,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법제화는 규제 중복 및 방송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방송통신·미디어·플랫폼 분야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방송 및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현행 방송법령 및 방송사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심의 및 규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바, 동일한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법제화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방송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0